

문서번호	시설안전팀-6394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8.10.29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팀장	건설안전본부장
		10/29
고정일	정우철	김승호
협 조		
	대리	김동영
감 사		

2018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

2018. 10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시설안전팀

2018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

일 시 : 2018년 10월 24일(수) 11:00~11:30

장 소 : 가락몰 업무동 14층 시설안전팀 회의실

참 석 자

- 가설건축물 심의회 위원

구 분	소 속	성 명	참석여부
위원장	건설안전본부장	김승호	참석
위원	기획팀장	권상구	참석
위원	재무팀장	김이종	불참
위원	농산팀장	서경남	참석
위원	수산팀장	김승로	참석
위원	환경교통팀장	김인수	참석

※ 유통물류팀장은 의안 제1호에 대한 소관부서장으로 심의위원에서 제외함

- 간 사 : 시설안전팀장 정우철

소관부서

- 의안 제1호 : 유통물류팀

안 건

- 의안 제1호 : 채소임시경매장 내 서울청과 임시사무실(컨테이너) 4동 신축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결정한다.

회의 내용 : 회의록 참조(붙임 #2)

심의 결과

- 의안 제1호 : 원안 승인

□ 승인 조건

1. 특기사항

- ㉠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선임하고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완료 후 공사감리완료확인서를 제출한다.
- ㉡ 화재안전을 위해 신설되는 컨테이너(임시사무실)에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㉢ 시설현대화사업,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'서울청과(주)'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, 시설물 및 공작물,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으며, 대체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.

2. 일반적 사항

- ㉠ 본 시설의 설치, 관리, 철거 비용은 서울청과(주)가 부담한다.
- ㉡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로 사용을 금지하며,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서울청과(주) 비용으로 철거한다.
- ㉢ 서울청과(주)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,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, 본 시설의 설치, 사용,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㉣ 설치공사시 통행인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, 공사용 잔재물은 서울청과(주) 책임하에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한다.
- ㉤ 가설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“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”에 의뢰하여 작성한다.
- ㉥ 설치공사 관련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의 지도, 감독을 받는다.
- ㉦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한다.
 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“건설업 면허”를 소지한 업체
 -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“전기공사업 면허”를 소지한 업체

- ㉠ 공사 착공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토록 할 것
 -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
 - 설계도서
 - 공사도급계약서
 - 공사감리계약서
- ㉡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한다.
- ㉢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 신고한다.

□ 행정 사항

1.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(유통물류팀)
2.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(시설안전팀)
3. 착공계 제출 (서울청과㈜ → 시설안전팀)
 -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
 - 설계도서
 - 공사도급계약서
 - 공사감리계약서
4. 시공관리(시설안전팀)
5. 준공계 제출 (서울청과㈜ → 시설안전팀)
6.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(유통물류팀)

- 붙임 :** 1. 의결서 1부
 2. 회의록 1부
 3. 부의안 1부. 끝.